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전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주식회사 CL

91. 주식회사 CM

92. 주식회사 CN

93. 주식회사 CO

94. CP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피 고 CQ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C, H, Q, V에게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2022.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의 나항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 H, Q, V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의나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제1의 나항 원고들이,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고가 보유한 'CR'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 2) 원고들은 아래 나.항과 같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전국 각지에서 별지 1 '가맹점' 기재와 같이 각 CS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가맹계약 체결

- 1) 원고들과 피고는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중 가맹비 지급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가맹사업권의 허여

- 1.1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에서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과 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계약자에게 허여한다.

제2조 최초 가맹비 및 고정 수수료

- 2.1 가맹사업권 허여일 또는 그 이전에 가맹계약자는 부록 B에 명시된 최초 가맹비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2.2 지급일이나 그 이전에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에게 고정수수료(부록 B에 명시된 총 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를 지급한다. 고정수수료 지급 시마다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가맹사업자가 수시로 지정하는 양식의 총수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3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한 가맹계약자의 지급은 제1.1조에 명시된 바대로 허여된 권

리에 대한 대가이며 가맹사업자의 특정 의무 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제5조 승인제품 및 비품

5.3 가맹계약자는 본건 사업의 운영 시 사용될 모든 비품, 재료, 장비 및 서비스를 지침서에 명시된 승인절차에 따라 공급 및 판매 이전에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구매한다.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인도불이행, 인도지연 또는 해당 조건과 상충하는 인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부록B

고정수수료: 총수입(총수입이란 가맹점에서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또는 본건 사업상 판매된 승인 제품 및 기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자가 수령한 모든 총 수입액 및 서비스 수수료를 의미한다. 단, 법률상 가맹계약자가 정부 당국에 납부하도록 요구받았고, 실제로 납부한 판매세 및 기타 세금은 제외되며, 금전등록기상의 현금부족액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는다)의 6%

최초 가맹비: (생략)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Initial Fee)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계속 중에는 매달 고정수수료(Continuing Fee) 등을 지급하여 왔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피고의 정산요구에 따라 물품대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의 정보공개서 중 차액가맹금 관련 기재

1) 피고는 2020년도, 2021년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가맹점사업자(원고들)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피고)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19, 2020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26,669(천원)	29,353(천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78%	4.5%

※ 2019, 2020년말 영업 중인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6개월 미만의 운영점들은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맹점들은 전체 매출액(차액가맹금)/운영개월*12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 상기 차액가맹금은 해외 내륙 및 해상 운송료, 통관, 관세, 국내 운송료, 보관료, 금융비용, 재활용비용, 보험료, 통관 시 필요한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차액가맹금은 기재된 금액보다 작습니다.

2)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가맹점의 2019년도, 2020년도 매출액은 별지 1 '매출액'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07, 112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2조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형태의 이른바 차액가맹금(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원고들로부터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

피고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들은 원재료의 원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원고들 매출액의 3.78%의,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원고들 매출액의 4.5%의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6. 1.부터 2021. 6.까지의
차액가맹금 중 일부(1/2)를 먼저 청구한다.

나. 피고

- 1)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2) 피고는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동종의 가맹본부들도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고, 피고가 지급받는
차액가맹금은 다른 피자 가맹본부 대비 많지 않다.
- 4) 가맹사업법상의 차액가맹금 정의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차액가맹금은 그 차이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을 차액가맹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1) 가맹사업법령에 차액가맹금 지급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지급받는 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위와 같은 가맹금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라면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맹사업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계약에 따라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지급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고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차액가맹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들 주장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금의 지급형태 중 어느 하나만을 택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결국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맹사업법령에서 여러 지급형태의 가맹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러한 가맹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피고는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므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 약정이 있는지 여부

가) 위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인보이스에 피고가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점, ③ 가맹사업법령이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 및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들이 납부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 중 일부는 2020. 12.경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제11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제11조 제2항 제4호),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위 심결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약정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도 들고 있으나, 피고의 임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 수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보이므로,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차액가맹금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른 피자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 관행 관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6~17.7%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수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설령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다른 피자 가맹본부대비 많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금은 하나 또는 여러 지급형태로 약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부분만 분리하여 다른 피자 가맹본부보다 차액가맹금 비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맹금 자체가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수령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을가맹사업법령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차액가맹금의 범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적정한 도매가격'이란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21. 10. 28.자 2019헌마288 결정 참조).

2) 피고가 수령한 차액가맹금의 인정 범위

가) 2019 ~ 2020년 차액가맹금 부분

2019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이 3.78%이고, 2020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이 4.5%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맹사업법상의 차액가맹금 정의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차액가맹금의 기준이 서로 달라 정보공개서 기재 금액은 '원재료의 구매금액'만 공제한 것이고,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차액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정보공개서에 '상기 차액가맹금은 해외 내륙 및 해상 운송료, 통관, 관세, 국내 운송료, 보관료, 금융비용, 재활용비용, 보험료, 통관 시 필요한 수수료 등의 비용(이하 '구매 관련

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차액가맹금은 기재된 금액보다 작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증거, 갑 제10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정보공개서양식에 의하더라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 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에는 원재료의 구매금액뿐만 아니라 구매 관련 비용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공제하였어야 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가 구매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정산¹⁾ 하고 있는바, 관세 등 구매 관련 비용 중 일부는 원고들이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구매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구매 관련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0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2016 ~ 2018년, 2021년 차액가맹금 부분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차액가맹금이 원고들 매출액의 3.78%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0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21년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원고들 매출액의 4.5%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20년 차액가맹금 비율이 2021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구체적 인정 금액

원고들의 2019년 매출액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 3.78%를 적용하고, 2020년 매출액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 4.5%를 적용하여 이를 합산하면, 그 결과는 별지 1 '인용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C(순번 3), 원고 H(순번 8), 원고 Q(순번 17), 원고 V(순번 22)은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C, H, Q, V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 H, Q, V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이종찬 판사 전승환

별지

1)갑 제108호증(관세정산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매년 초 세관에 확정 신고/납부 후 확정금액 기준으로 매장별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② 매장별 배분은 연간 입고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③ 환급 발생 시 확정 신고/납부 후 월 인보이스에서 일시에 차감되며, 추가 납부 발생 시 확정 신고/납부월과 익월 2회에 나누어 청구한다.